4. 環境影響評價法施行令中改正令

대통령령 제15,475호 1997. 9. 8

주 요 골 자

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받은 사업을 협의완료후 5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 재협의하도록 함(영 제13조제1항)

나.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업규모가 100분의 15이상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 · 강구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영 제14조제2항)

다. 모법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협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부과대상오염물질의 종류, 부담금의 산정방법 · 징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의 3 내지 제14조의 9)

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저유시설 및 신항만건설사업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반면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분뇨를 유입하여 처리하

는 분뇨처리시설 등은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적어 이를 환경영향평가상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영 별표 1)

마. 사업계획의 승인·허가후 기존 사업규모를 확장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상사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규모가 100분의 15이상 확장되는 경우에는 확장부분을 포함한 전체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영 별표 1).

개정이유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환경여건이 변화하더라도 재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고, 또한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사중지명령외에 달리 개정제재수단이 없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제도가 실효성이 미흡한 문제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일정한 기간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재협의를 하도록 하고, 또한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관한 협의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1997. 3. 7, 법률 제530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재협의대상이 되는 사업미착공기간,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산정방법·징수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풍수해대책법 제25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승인기관"을 "승인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30일이상"을 "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30일 이상"으로한다.

5. 대상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을 제외하며, 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6. 기타 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승인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지방환경청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30일이내"를 "60일이내"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내용의 타당성여부에 관한 검토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3 조(재협의대상범위)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이 통보된날부터 5년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의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서 면적·길이·용량 기타 이에 준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정하여진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규모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통보(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통보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의 반영여부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당시의 사업계획규모보다 100분의 30이상 또는 별표 1의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사업규모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서 면적·길이·용량 기타 이에 준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토지면적 또는 길이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통보 당시의 사업계획에 반영된 토지면적 또는 길이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라 함은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1의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규모(면적·길이·용량 기타 이에 준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된 토지면적 또는 길이)가 100분의 15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3. 법 제2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 부과·징수되는 시설(이하 "부과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통보시 당해 사업장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내용의 변경시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4조의 2 내지 제14조의 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4 조의 2(환경영향재평가의 결과통보) 법 제26조의 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요

청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를 말한다.

제 14 조의 3(협의기준초과부담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하 "초과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물질

가. 황산화물

나. 암모니아

다. 황화수소

라. 이황화탄소

마. 먼지

바. 불소화합물

사. 염화수소

아. 염소

자. 시안화수소

차. 악취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물질

가. 유기물질

나. 부유물질

다.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라. 시안화합물

마. 유기인화합물

바. 납 및 그 화합물

사. 6가크롬화합물

아. 비소 및 그 화합물

자. 수은 및 그 화합물

차.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카. 구리 및 그 화합물

타. 크롬 및 그 화합물

파. 페놀류

하. 트리클로로에틸렌

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너. 망간 및 그 화합물

더. 아연 및 그 화합물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부과대상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물질

가. 유기물질

나. 부유물질

제 143 조의 4(초과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초과부담금은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악취의 경우에는 배출물질 1천세제곱미터당부과금액), 지역별부과계수,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악취의 경우에는 악취농도별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5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5

항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과부담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기본부과금중 초과부담금이 부과되는 배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본부과금중 초과부담금이 부과되는 배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 지역별부과계수 및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는 별표 2와 같다.

제 14 조의 5(기준초과배출량 등) ① 제1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배출량은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확인에 따른 오염물질채취일의 협의기준초과 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배출오염물질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오염물질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하고, 배출기간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료채취일)부터 협의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완료할 예정일(이하 "조치완료예정일"이라 한다)까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3에 의하여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제 14 조의 6(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 ① 제14조의 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9조
2.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
3. 기타 시설의 경우 :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2회계연도를 단위로 이를 산정한다.

제 14 조의 7(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 ① 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는 초과부담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초과부담금을 부과(제1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과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는 기초초과배출량·부과금액·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부담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 14 조의 8(초과부담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재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완료예정일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전에 조치가 완료되어 초과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초과부담금의 부과후 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초과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재부과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상시설의 조치완료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초과부담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④ 초과부담금의 납무통지를 받은 자(이하 "부담금납부자"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초과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초과부담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4 조의 9(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징수된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16조제3호 및 제4호중 "별표 2"를 각각 "별표 4"로 하고, 동조에 제4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 2. 법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의 부과·징수

별표 1 가목(5)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전

별표 1 각목 (7)(나)·(다)·(마)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부지조성면적"을 각각 "부지면적"으로 한다.

별표 1 각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조성사업중 면적이 2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전

별표 1 가목(9)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조성면적"을 "부지면적"으로 한다.

별표 1 가목(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로서 부지면적이 2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전

별표 1 가목(1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조성면적"을 "부지면적"으로 한다.

별표 1 가목(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전

별표 1 나목(1)·(2)·(3)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의 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중 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 1 나목 (4)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인 것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1) 내지 (5) 및 (7)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입주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전 또는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는 승인·신고·입주계약등의 완료전

별표 1 다목(3)(가)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3천킬로와트이상인 것"을 "3천킬로와트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이상인 것"으로 하고, 동목(3)(다)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345킬로볼트"를 "765킬로볼트"로 하며, 동목(3)(라)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5만제곱미터"를 "30만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1 다목(4)를 삭제하고, 동목(5)(가)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3천킬로와트이상인 것"을 "3천킬로와트이상인 것 공장용지내 자가용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이상인 것"으로 하며, 동목(5)(다)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345킬로볼트"를 "765킬로볼트"로 하고, 동목(5)(라)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5만제곱미터"를 "30만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1 다목(6)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저유시설"을 "저유시설로서 저장용량이 10만킬리터 이상인 것"으로 하고, 동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석유사업법 제4조,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개발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설로서 저장용량이 10만킬로리터이상인 것	○ 석유사업법에 의한 저유시설의 경우에는 동법 제4조,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석유비축시설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 후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인가·허가·승인전

별표 1 라목(1)(가) 및 동목(2)(가)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외곽시설"을 각각 ""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제곱미터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으로 한다.

별표 1 라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제곱미터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제곱미터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및 ㈏외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것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별표 1 마목(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5조"로 하고, 동목(1)(가)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폭 25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를 "폭 25미터 이상으로서 것에 한한다."를 "폭 25미터 이상으로서 도로구역안에 동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이 3만제곱미터이상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1 바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3)을 삭제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000만세제곱미터이상인 저수지·보 또는 유지	○ 농어촌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의 인가전

별표 1 사목(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법 제2조 또는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동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의 건설사업중 길이 1킬로미터이상인 것	○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별표 1 차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간척 또는 개간사업중 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 농어촌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전

별표 1 가목(3)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온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 온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전
(6)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서 조성면적이 25만제곱미터이상인 것	○ 도시공원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결정전

별표 1 타목(3)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토지형질변경면적"을 "총용지면적"으로 하고, 동목(3)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완료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전)"으로 하며, 동목(4)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시설면적"을 "총용지면적"으로 한다.

별표 1 파목(4)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산림훼손면적이 35만제곱미터이상인 것"을 "산림형질변경면적이 20만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하고, 동목(4)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훼손허가전"을 "산림형질변경허가전"으로 한다.

별표 1 하목(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가.에서 파.까지의"를 "가목 내지 파목 및 더목의"로 한다.

별표 1 거목(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분뇨를 유입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을 제외한다.

별표 1 거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개) 최종처리시설중 매립시설로서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330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전 또는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전

만세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2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전 또는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전
㈏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 또는 고온열분해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이상인 것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하고, 동란에 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으로 본다.
4. 하나의 사업이 2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얻고자 하는 시기로 본다.
5.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규모가 승인등을 얻은 사업규모의 100분의 15이상 확장되는 경우에는 확장부분을 포함한 전체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사업의 범위를 적용한다. 다만, 확장되는 사업규모가 승인등을 얻은 사업규모의 100분의 15미만인 경우에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사업규모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으로 본다.
6.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규모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 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평가서의 작성·협의 등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제1호 및 제2호 중 "사업(다만,

도시의 개발, 산업일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관광단지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산지의 개발, 매립 및 개간사업중 면적이 200만제곱미터이상인 것을 제외한다)"을 각각 "사업"으로 하여 동표를 별표 4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199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평가서의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의 협의 또는 재협의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평가서의 재협의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평가서의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의 "5년이내"를 "7년이내"로 한다.

제 4 조(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5 조(협의기준초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의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한 협의기준초과 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 6 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 7 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3호 별표 2"를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4"로 한다.

제 8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초과부담금 산정기준(제14조의4제3항관련)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

(금액단위 : 원)

구분 / 오염물질	오염물질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물질1천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지역별부과계수			악취농도별부과계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3이상 4미만	4이상 5미만	5이상
황산화물	500		1	1.3	1.6	1.9	2.5	3.5	4.0	4.5	2	1	1.5			
먼지	770		1	1.3	1.6	1.9	2.5	3.5	4.0	4.5	2	1	1.5			
암모니아	1,400		1	1.3	1.6	1.9	2.5	3.5	4.0	4.5	2	1	1.5			
황화수소	6,000		1	1.3	1.6	1.9	2.5	3.5	4.0	4.5	2	1	1.5			
이황화탄소	1,600		1	1.3	1.6	1.9	2.5	3.5	4.0	4.5	2	1	1.5			
특정유해물질 불소화합물	2,300		1	1.3	1.6	1.9	2.5	3.5	4.0	4.5	2	1	1.5			
특정유해물질 염화수소	7,400		1	1.3	1.6	1.9	2.5	3.5	4.0	4.5	2	1	1.5			
특정유해물질 염소	7,400		1	1.3	1.6	1.9	2.5	3.5	4.0	4.5	2	1	1.5			
특정유해물질 시안화수소	7,300		1	1.3	1.6	1.9	2.5	3.5	4.0	4.5	2	1	1.5			
악취	500									2	1	1.5	1	1.25	1.5	

비고 : 1. 협의기준초과율(%)=(배출농도-협의기준농도)÷협의기준농도×100

2. Ⅰ지역·Ⅱ지역 및 Ⅲ지역의 구분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다.

2.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금액단위 : 원)

구분 / 오염물질	오염물질 1킬로그램 당부과금액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지역별부과계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청정 및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유기물질	25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부유물질	25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크롬및그화합물	75,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망간및그화합물	3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아연및그화합물	3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페놀류	1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시안화합물	1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구리및그화합물	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카드뮴및그화합물	5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수은및그화합물	1,2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유기인화합물	1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비소및그화합물	1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납및그화합물	1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6가크롬화합물	3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1,2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트리클로로에틸렌	3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비고 : 1. 협의기준초과율(%)=(배출농도-협의기준농도)÷협의기준농도×100

2. 유기물질의 오염측정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과 화학적산소요구량을 말한다. 그중 높은 수치의 것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3. 청정 및 가지역·나지역 및 특례지역의 구분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다.

3.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금액단위 : 원)

구분 / 오염물질	오염물질 1킬로그램 당부과금액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지역별부과계수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청정 및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유기물질	250													
부유물질	250													

비고 : 1. 협의기준초과율(%)=(배출농도－협의기준농도)÷협의기준농도×100

2. 유기물질의 오염측정단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산소요구량을 말하며, 그중 높은 수치의 것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3. 청정 및 가지역·나지역 및 특례지역의 구분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다.

3.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금액단위 : 원)

구분 / 오염물질	오염물질 1킬로그램 당부과금액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지역별부과계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청정 및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유기물질	25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부유물질	25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비고 : 1. 협의기준초과율(%)=(배출농도－협의기준농도)÷협의기준농도×100

2. 유기물질의 오염측정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으로 한다.

3. 청정 및 가지역·나지역 및 특례지역의 구분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부과대상시설의 경우

(금액단위 : 원)

구분 / 오염물질	오염물질 1킬로그램 당부과금액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지역별부과계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청정 및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유기물질	25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부유물질	25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비고 : 1. 협의기준초과율(%)=(배출농도－협의기준농도)÷협의기준농도×100

2. 유기물질의 오염측정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으로 한다.

3. 청정 및 가지역·나지역 및 특례지역의 구분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방법(제14조의5제3항관련)

1.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방법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

구 분	오염물질	산정방법
일반오염물질	황산화물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64÷22.4
	먼지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
	암모니아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17÷22.4
	황화수소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64÷22.4
	이황화탄소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64÷22.4
특정대기유해물질	불소화합물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19÷22.4
	염화수소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36.5÷22.4
	염소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71÷22.4
	시안화수소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27÷22.4

비고 : 1. 협의 기초초과농도 = 배출농도－협의기준농도

2. 배출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의 농도를 배출농도로 본다.
3.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소숫점이하 넷째자리까지 계산하고, 일반오염물질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4. 먼지의 배출농도의 단위는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mg/m^3)으로 하고, 그밖의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의 단위는 피피엠(ppm)으로 한다.

나. 폐수배출시설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

비고 : 1. 협의 기초초과농도 = 배출농도－협의기준농도

2.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배출농도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의 농도를 배출농도로 보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배출농도가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배출농도로 본다.
3.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소숫점이하 넷째자리까지 계산하고, 일반오염물질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4.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 / ℓ)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외의 부과대상시설의 경우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

비고 : 1. 협의 기초초과농도 = 배출농도－협의기준농도

2.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배출농도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농도를 배출농도로 본다.
3.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4.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 / ℓ)으로 한다.

2. 일일유량의 산정방법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

일일유량 = 측정유량×일일조업시간

비고 : 1. 측정유량의 단위는 시간당 세제곱미터(m^3/HR)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기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시간으로 표시한다.

나. 가외의 부과대상시설의 경우

일일유량 = 측정유량×일일조업시간

비고 :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ℓ/min)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기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시간으로 표시한다.